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54
------------	-----

제출년월일 '99. 9.
제출자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공포(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제16267호 1999. 4. 30))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 주요골자

- 위탁관리 범주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하여 위탁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유상으로 함 (안 제5조)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사항에서 제외 (안 제7조)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부담을 수혜 형평유지를 위해 조정 및 확대 (안 제22조)
 - └ 조정 : 영세민등 이자부담을 완화 10년이내 연8% \Rightarrow 연5%
 - └ 추가 : - 농경지를 실경직지에게 매각할 때 5년이내 연8%
 -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5년이내 연8%
-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으로 11월에 부과하였으나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낸초에 부과하도록 일원화함 (안 제23조)
-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조정계수 적용에 의한 감액)에서 변상금은 제외 (안 제24조)

-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촉진하고자 연간 대부료가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 보다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20%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가감조정 (안 제24조)
- 건물 부지평가시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부지면적 산출 (안 제26조)
- 공용 전세주택은 관사 정의에서 삭제하고 채권으로 관리 (안제49조)

3.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제16267호 1999. 4. 30)
- 개별법
- 기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충청북도 성안)

붙 임

- 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
- 나. 신·구조문대비표 1 부.
- 다. 기타 관련법규 발췌 1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집중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 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2 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 ·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6호 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5퍼센트”를 “연 5퍼센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제1호 중 “제6호”를 “제2호, 제6호”로 하고, “제16호”를 “및 제16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5호 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제1항 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 중 “영 제9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체석의”를 “광업체석의”로 하고, 제4항 중 “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6항 중 “재산(건축의)”를 “재산(건축법의)”로 하고,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 제8항 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고, 제9항 중 “제9조 제1항의”를 “제19조 제1항의”로 하고,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로 하며,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하되, 월 할로 계산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2 제1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나목 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마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2호 가목 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3호 가목 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가율	대부료 인상을
10% 이상 20% 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 이상 50% 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 이상 100% 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 이상 200% 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 이상 500% 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 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회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X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의 총면적)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의 총 면적)		

3.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 부동산처분 신탁 및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제3항 제2호 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제3호 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8조의3 제1항제4호 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제3항제2호 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 중 “공장용지내”를 “사업장내”로 하고, 제4항제1호 중 “외·투법 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하며, 제3호 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호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의국인”으로 하여,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품택 대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대각재산을 담보로 한 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대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청사정비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당해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피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정 등의 순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관서,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을 “유관 행정관서를”로 한다.

제49조 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 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대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증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
·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p>〈신설〉</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현행과 같음) ②----- 1. ----- 2. 〈삭제〉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옛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8조(처분재원의 비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 〈삭제〉</p>
<p>제14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불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생략) 5. 손해보험증서 제출 6. 사용허가표지 부착 7.~8.(생략) 	<p>제14조(사용허가 조건)----- 1.~4.(현행과 같음) 5. 〈삭제〉 6. 〈삭제〉 7.~8.(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제17조 〈삭제〉</p>
<p>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 할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설의 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4.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u></p> <p>2. <u>제3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u></p> <p>3.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 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u></p> <p>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2.~4. (생략)</p> <p><u><신 설></u></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연5퍼센트----- ----- 1.~4. (현행과 같음)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 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 ----- ----- 1. <삭 제> 2. -----제1호----- ----- 3. <삭 제> ③----- ----- ----- ----- 1. -----제2호, 제6호----- 및 제16호----- 2.~5. (현행과 같음) 6.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p>

현 행	개 정 안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증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 ----- ----- ----- 1.~4. (현행과 같음) 5.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때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정수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사용료의요율----- ----- ----- ----- -----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광업채석의----- ----- ----- ----- -----

현 행	개 정 안
<p>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④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에 저축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p>⑤ (생략)</p> <p>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단서신설></p>	<p>④ 다음 각호의 -----</p> <p>-----</p> <p>-----</p> <p>1. -----</p> <p>2. -----</p> <p>-----</p> <p>-----</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재산(건축법의 -----</p> <p>-----</p> <p>-----</p> <p>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p> <p>-----</p> <p>-----</p> <p>-----</p> <p>⑨ ----- 제19조 제1항의 ----- 벤처기업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p> <p>-----</p> <p>-----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할 수 있다.</p>
<p>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 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⑩ ----- 제19조 제1항의 ----- 벤처기업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p> <p>-----</p> <p>-----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일대·대부하는 경우의 일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의·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u> 나.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u> 다. <u>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u> 라. (생 략) 마.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u> 바.~사. (생 략)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 나. <u>고용창출 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 다. (생 략) 라.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u> 마.~바. (생 략) 	<p>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p> <p>-----</p> <p>-----</p> <p>-----</p> <p>-----</p> <p>1. -----</p> <p>-----</p> <p>가. <u>외국인투자촉진법</u>-----</p> <p>-----</p> <p>-----</p> <p>-----</p> <p>-----</p> <p>나. -----</p> <p><u>이상인 사업</u></p> <p>다. <u>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u></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u>외국인</u> -----</p> <p>-----</p> <p>-----</p> <p>바.~사. (현행과 같음)</p> <p>2. -----</p> <p>-----</p> <p>가. -----</p> <p><u>미만인 사업</u></p> <p>나. <u>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u></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u>외국인</u> -----</p> <p>-----</p> <p>-----</p> <p>마.~바.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3.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는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사업	3.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가. -----
나. 고용창출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 랙)	다. (현행과 같음)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인으로서 전자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 -----
마.~사. (생 랙)	마.~사. (현행과 같음)
<u>제2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u>	<u>제2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u>
<u>증 가 율</u>	<u>대부료인상율</u>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5\% - (\text{증가율} - 50\%) \times 0.05$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감감 조정할 수 있다.</p> <p>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p>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 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사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재부를 받은자가</u> <u>다른사람과 공용으로</u> <u>사용하는 출연액</u> <u>(건물의 경우에는</u> <u>부담분의 출연액)</u></p> <p><u>재부를 받은 자가 전용</u> <u>으로 사용하는 면적</u> <u>공용으로 사용하는 자풀이</u> <u>전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액</u> <u>(건물의 경우에는</u> <u>부담분의 출연액)</u></p>
<p>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p>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p>3.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p> <p>4.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u><신설></u>	

현 행	개 정 안
<p><u><신설></u></p> <p>제2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생략) <u>③경작목적으로 대부분한 농지의 경우에</u> <u>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u> <u>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u> <u>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u> <u>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u></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u>유예할 수</u> 있다.</p> <p>제28조(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 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 재원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p> <p>제30조(대부정리부 비치) ① <u>공유재산 재산</u> <u>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u> <u>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 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현행 과 같음) <u>③ <삭제></u> <u>④ 제1항 및 제2항의 -----</u> ----- ----- ----- ----- ----- <u>유예하거나 따로</u> <u>정할 수 ---.</u></p> <p>제28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 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 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충당하여야 한다.</p> <p>제30조(대부정리부 비치) ① <u>재산관리관</u> <u>은 ----- 대부정리부-----</u></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④ ----- ----- ----- ----- -----
1. <u>외·투자시행령</u>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당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1. <u>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u>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 ----- <u>사업장내의 재산</u>
4. <u>수출지향형 외국인</u>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4. <u>외국인</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생략)
<u><신설></u>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균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해 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차별 청사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논차별청사신축계획에 의하여 시·읍·면·동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위치, 규모, 재원확보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44조(청사정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당해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 위험, 신설기관, 일자, 노후, 협소, 위치 부적정 등의 순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부칙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미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 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 의 개정구정에 의한 미각대금의 분할납부 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 기초는 이 조례 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 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 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증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 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 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 부터 적용한다.</p>

관련 법규 발췌

I. 地方財政法

第72條 (公有財產의 범위·구분 및 종류) ① 이 조에서 '公有財產'이라 칼은 地方自治團體의 부당이나 聲明의 指定 또는 條例이나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所有로 된 財產으로서 大項頭銜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公有財產은 그 用途에 따라 이를 行政財產·保存財產 및 雜種財產으로 구분하고, 行政財產은 이를 公用財產·公用用財產 및 企業用財產으로 分類한다.

第73條 (公有財產의 管理와 그 委任)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속에 속하는 公有財產을 管理하되, 소속 公務員에게 委任하여 公有財產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公務員을 "財產管理官"이라 한다.

II. 地方財政法施行令

제80조 (동기·등록 및 대장관리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동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5·16]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개정 95·5·16, 96·4·27, 98·7·16>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목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95·5·16>

1. 지방자치법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대각
 8. 지방의회의결을얻은후2회계연도가경과되거나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④ 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5·5·16>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대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할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할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법 제77조제 2항의 규정에 위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신설 95·5·16, 98·7·16> <개정 99·4·30>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90·11·6, 99·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결정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0·11·6, 93·9·23, 94·12·23 대령 14447, 96·6·29, 98·7·16>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각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의회하여 감정평가된 차가를 계열공사지가에 갈을 수 있다. <개정 99·4·30>

②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㊂. 삭 제 <99·4·30>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90·11·6>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항의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기타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②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0·8·8, 90·11·6, 93·9·23, 94·9·29, 98·7·1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삭제 <90·11·6>

4. 제8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5.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사유자에게 매각할 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9.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할 때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 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11.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12.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13.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14. 인구분산정책에 따라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15.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 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17.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18. 지방공기업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체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20.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21. 삭제 <90·11·6>
 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등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 22의2.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할 때
 23. 제공고 입찰에 불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24.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 24의2.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때
 25.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불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26.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8.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99·4·30>
 - ③ 상반된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90·11·6>
- 제95조의2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동기) ①집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잡종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각하는 경우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대대계약 또는 양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증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1·5]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 잡종재산의 대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9·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9·29, 98·7·16>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 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 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4·30>

③ 잡종재산 중 동산(선박을 제외한다)의 대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99·4·3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4·30>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대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신설 99·4·30>

⑦ 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9·4·30>

제102조의4 (잡종재산의 신탁) ① 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종합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중 대년도 할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재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할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 재산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고, 당해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동기가 곤란한 정착물을 현상태대로 이전한다.

2. 기타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 금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동산신탁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타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9. 4. 30]

제107조 (온낙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온낙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제공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3. 항소 제기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8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6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5. 상고 제기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②제1항의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온낙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其他法律】

I. 地方自治法

- 第135條 (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 1 項의 公共施設은 關係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

II.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5·12·29 法5091, 96·12·31, 99·2·8>

1. “工場”이라 함은 建築物 또는 工作物, 物品製造工程을 形成한 機械·裝置등 製造施設과 그 附帶施設(이하 “製造施設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業을 영위하기 위한 事業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아파트型工場”이라 함은 同一建築物안에 다수의 工場이 동시에 入住할 수 있는 多層型 集合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III.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第27條 (國·公有地의 處分制限 등) ①產業團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第 2 項 第 6 號 각目的 사업에 필요한 土地는 당해 產業團地開發事業目的의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다. <改正 95·12·29>

②產業團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財產은 國有財產法·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施行者(入住業體를 포함한다)에게 隨意契約으로 貸貸 또는 讓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財產의 用途廢止(行政財產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讓渡에 관하여는 實行計劃承認權者가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③第 2 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協議要請이 있을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用途廢止 및 讓渡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에게 貸貸 또는 讓渡하고자 하는 財產 中管理廳이 不明한 財產에 대하여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財政經濟院長官이 이를 管理 또는 處分한다. <改正 95·12·29>

IV.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特別措置法

第14條 (國有財產 등의 처분에 관한 特例) 國有財產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產의 管理廳 또는 地方財政法 第73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產의 管理廳은 中小企業者가 廢道 기타 이와 유사한 國有財產 또는 公有財產을 부득이하게 工場用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때에는 國有財產法 第1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產管理計劃 또는 地方財政法 第7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產管理計劃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財產의 管理廳 또는 公有財產의 管理廳은 國有財產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國有財產 또는 公有財產을 부득이하게 工場用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中小企業者에게 隨意契約에 의하여 이를 賣却할 수 있다.

V. 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

第9條 (外國人の 柱式取得制限에 대한 特例) ①外國人(大韓民國에 6月 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個人을 말한다) 또는 證券去來法 第2條 第16項의 外國法人 등에 의한 벤처企業의 柱式取得에 관하여는 同法 第203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 등에 의한 벤처企業의 柱式取得에 관하여는 당해 벤처企業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制限할 수 있다.

第19條 (國・公有財產의 賣却 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專用團地 및 벤처企業集積施設의 開發 또는 設置와 그 運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產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 國有財產 또는 公有財產을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에게 賣却하거나 貸賃할 수 있다. <改正 98·9·23>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產의 價格・貸貸料・貸貸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有 또는 公有의 雜種財產인 不動產을 벤처企業에 貸賃하는 조건으로 信託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財產法 第45條의2 내지 第45條의4의 規定은 公有 不動產의 信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私立學校의 學校法人은 國有財產法 第24條 第3項, 地方財政法 第82條 및 第83條, 高等教育法 및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에게 國有 또는 公有의 土地나 大學의 校地의 일부를 貸賃하여 建物 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種類・用途 등을 고려하여 貸賃契約이 중요되는 때에는 당해 施設物을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私立學校의 學校法人에 寄附하거나 土地 또는 校地를 原狀으로 회복하여 返還하는 것을 貸賃條件 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98·12·30>

- ⑤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는 國有財產法 第24條 第4項, 地方財政法 第84條, 教育法 및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불 구하고 第 4 項의 規定에 의하여 築造한 施設物을 貸貸目的과 동일한 用途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者에게 이를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9·23>
- ⑥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使用·收益의 期間·條件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VI. 外國人投資促進法

第9條 (法人稅 등의 減免)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外國人投資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 2 項 내지 第 5 項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취득세·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를 각각 減免한다.

1.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強化에 繫要한 產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 隨 伴하는 事業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영위하는 事業
3. 기타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②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對 象이 되는 事業을 영위함으로써 發生한 所得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事業을 開始한 후 당해 事業에서 최초로 所得이 發生한 課稅年度(事業開始日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事業에서 發生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7年 이내에 終了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당해 事業所得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 相當額(總算出稅額에 第 1 項 각號의 事業을 영위함으로써 發生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을 말한다)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金額(이하 이 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 이내에 終了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③ 外國投資家가 取得한 柱式 등에서 생기는 配當金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각 課稅年度의 所得에 대하여 그 企業이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이 되는 事業을 영위함으로써 發生한 所得의 比率에 따라 減免하되,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稅額의 全額을,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④ 外國人投資企業이 申告한 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取得·保有하는 財產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는 다음 각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課稅標準에서 控除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控除期間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 1號 및 第 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期間 및 比率에 의한다.

1. 取得稅 · 登錄稅 및 財產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財產에 대한 算出稅額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金額(이하 이 項 및 第 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 이내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2. 綜合土地稅는 事業開始日부터 당해 財產의 課稅標準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金額(이하 이 項 및 第 5項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 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을 課稅標準에서控除

⑤外國人投資企業이 事業開始日 전에 第 1項 各號의 사업에 사용할 目的으로 取得 · 保有하는 財產이 있는 경우에는 第 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財產에 대한 取得稅 · 登錄稅 · 財產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課稅標準에서 控除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公除期間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 2號 및 第 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期間 및 比率에 의한다.

1. 第 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를 받은 날 이후에 取得하는 財產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는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減免

2. 財產稅는 당해 財產을 취득한 날부터 5年 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그 다음 3年 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감면

3. 綜合土地稅는 당해 財產을 取得한 날부터 5年 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控除

⑥外國人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 2項 내지 第 5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終了日(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다음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 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를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減免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變更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租稅減免內容 變更決定이 있는 경우 그 變更決定의 내용은 당초 減免期間의 殘餘期間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外國人 · 外國人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第 5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對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⑧財政經濟部長官은 第 6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減免內容變更

申請을 받거나 第 7 項의 規定에 의한 事前確認申請을 받은 때에는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그 減免·減免內容變更·減免對象 해당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第 4 項 및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의 減免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場을 管轄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⑨第 6 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 2 項 내지 第 5 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3條 (國·公有財產의 貸貸 및 賣却) ①財政經濟部長官, 國有財產의 管理廳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工場 기타 國·公有財產(이하 “土地 등”이라 한다)을 國有財產法 및 地方財政法의 關係規定에 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 外國人投資企業에 使用·收益 또는 貸付(이하 “貸貸”라 한다)하거나 賣却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 등을 貸貸하는 경우의 貸貸期間은 國有財產法 第27條 第 1 項·同法 第36條 第 1 項 및 地方財政法 第82條 第2項·同法 第83條 第 2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를 貸貸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產法 第24條 第 3 項 및 地方財政法 第82條 第 2 項·同法 第83條 第 2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土地위에 工場 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貸貸期間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기부하거나 原狀으로 회복하여 返還하는 조건으로 土地를 貸貸할 수 있다.

④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貸貸하는 土地 등의 貸貸料는 國有財產法 第25條 第 1 項·同法 第38條 및 地方財政法 第82條 第 2 項·同法 第83條 第 2 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 등을 外國人投資企業에게 賣却함에 있어서 買入하는 者가 買入代金을 一時拂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有財產法 第40條 第 1 項 및 地方財政法 第83條 第 2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付期日을 延期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⑥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有財產의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所有의 土地 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貸貸하는 경우에는 產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36條와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第3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土地 등의 貸貸料를 減免할 수 있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있는 土地 등
2.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35條의 2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企業

専用團地에 있는 土地 등

3.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產業團地(이하 “國家產業團地”라 한다)에 있는 土地 등

⑦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고 있는 土地 등을 外國人投資企業에게 賃貸하는 경우에는 地方財政法 第82條 第 2 項 및 同法 第83條 第 2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土地 등의 賃貸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⑧第 6 項 및 第 7 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企業에게 賃貸料를 減免하여 賃貸하는 土地 등이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第2條 第 5 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⑨第 2 項 및 第 8 項의 賃貸期間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更新할 때마다 第 2 項 및 第 8 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VII. 建築法施行令

第80條 (建築物이 있는 대지의 分割制限) 法 第49條 第 1 項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範圍”라 함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을 말한다. <1999. 4. 30 本條改正>

1. 住居地域 : 60제곱미터
2. 商業地域 : 150제곱미터
3. 工業地域 : 150제곱미터
4. 綠地地域 : 200제곱미터
5. 第 1 號 내지 第 4 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地域 : 60제곱미터